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9재다298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
원고(재심원고) A
피고(재심피고)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재다12693 판결
판 결 선 고 2020. 4. 29.

주 문

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원고(재심원고)는 재심의 소를 각하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김재형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민유숙
--	-----	-----

주심	대법관	이동원
----	-----	-----

	대법관	노태악
--	-----	-----